

1996. 11.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 ━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 ━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 충주시농촌전문인력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
- ━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제정 및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 결과

조례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96. 10. 4	'96. 10. 8	제18회 임시 회 3차 산업 건설위원회 ('96. 11. 2)	지역계획과장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96. 10. 21	'96. 10. 22		지적과장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96. 10. 4	'96. 10. 8	제18회 임시 회 2차 산업 건설위원회 ('96. 11. 1)	공기업과장
충주시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안	,	,	제18회 임시 회 4차 산업 건설위원회 ('96. 11. 4)	사회지도과장
충주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	,	,		보건소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시관내 농촌지역의 (준농림지역) 생활환경 저해요인의 사전예방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박시설등의 설치를 제한하므로서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준농림지역아에서의 행위제한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한 식품점객업종 단란주점, 유통주점과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종 호텔업, 여관업, 여인숙업 등을 대상으로 지정함. (안 제2조)
- 설치제한지역을 취락과 학교경계에서 200m이내의 지역으로 함. (안 제4조)

나.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가 개정 ('96. 6. 29) 공포되어 조례를 개정하며 평소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회의명칭 :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
⇒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변경
- 위원장 : '시장' ⇒ '부시장'으로 변경
- 위원수 : '17명' ⇒ '15명' 이내로 조정
- 안전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던중 환경부의 간이상수도관리조례준칙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간이상수도 관리자를 시장으로 함. (제2조)
- 관리자(시장)는 유지관리 상태를 년1회이상 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치토록 함. (제5조)
- 간이상수도 주변보호시설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함. (제7조)
-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용자 대표로 구성되는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두도록 함. (제13조)
-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등 일부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함. (제28조)

4.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 제안이유

-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Ⅲ 후원회의 기금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농촌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으로 함. (안 제5조)
- 위원회 기능으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안 제6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 제9조)

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1) 제안이유

-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변경, 금지명령, 시정요청 대상자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함.
-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 제4조(설치제한지역의 설정) 제1항에 있어 학교와 취락의 경계에서 200m라 함은 직선거리, 또는 기존도로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 요망되며,
-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유흥음식점과 러브호텔등을 규제하여 농촌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시기 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검토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그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조정 및 잘못 표기된 자구수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6조 제3항은 상위법령 개정과는 상관없이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전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신설하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모든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어 주민의 담수 액과 직결됨을 비추어 볼 때 입법예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있어서 그 정도나 범위가 포괄적이고 한계가 불분명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주민의 불이익이 우려됨.
- 따라서, 본 건을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수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음.
 - ①경미한 안전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한계와 범위를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수정 의결하는 방법
 - ②금번 신설된 제6조 제3항의 말미에,『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 수정 의결하는 방법등을 제시함.

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자를 시장으로 정하고, 상수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과 안내판을 제작 설치토록 하였으며,
- 관리자인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등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대폭 위임하므로서 현실적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기하도록 하는등 개정조례안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 다만, 제25조 제2항에 '교육, 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누가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제2항 서두에 관리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라.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 제6조 (위원회의기능)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모든 것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내용중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조문 수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4조 (기금의조성) 제1항 적립기금에 있어서 적립기금 목표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12조 (운용기금의사용) 제7호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인력육성을 위한 기타 사업에 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이 요망되며, 본 조례는 농민단체육성을 통한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승인 또는 필요한 경우 수정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마.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국민을 혼혹시킬 수 있는 과대 지면광고 및 방송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심각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 충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직하여 잘못된 광고에 대하여 규제함과 동시에 시민건강생활운동 전개 및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은 필요성이 인정되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질 의}

- 취락지역의 범위는?

☞ 답변

-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구를 말하며 인구 250명 이상과 가구 50호 이상을 취락이라고 함.

{질 의}

- 20호~30호 정도의 소규모 취락지역에 허가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등 문제가 예상되는데?

☞ 답변

- '96. 1월 건축법이 개정되어 시장이 필요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제가 가능도록 되어 있음.

{질 의}

- 학교, 취락경계로 부터 200m이내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데 거리의 측정방법은?

☞ 답 변

- 도면상의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임.

{질 의}

- 타 시군의 조례제정 사례와 제한지역의 거리는?

☞ 답 변

- 도내에서 충주와 보은군이 미제정 되었으며, 타 시군의 경우 학교, 취락 경계로 부터 500m이내로 하였으며, 충주는 200m이내로 완화한 것임.

4.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질 의}

- 제6조 제3항에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데 서면심의의 한계가 필요하지 않은지?

☞ 답 변

-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공시지가 책정에 있어서 세금과 토지보상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형편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질 의}

- 위원의 임기중 공무원인 경우 명확한 기간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지?

☞ 답 변

-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관련업무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음.

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질의)

- 현재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 답변 287개소임.

(질의)

- 종전의 조례에 의한 농촌가구에 수혜 정도는?

☞ 답변

- 원칙적으로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중 50%를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하나 실제로는 전액을 시에서 부담하여 왔음.

(질의)

-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 답변

- 관리자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과 관리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임.

(질의)

- 관리 관청과 수용자의 유지관리 구간을 계량기 전·후등으로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은지?

☞ 답변

-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임.

(질의)

- 관리비 체납시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답변

- 가산금 추징관계는 각 협의회별로 결정할 사항임.

④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질 의)

- 충주시의 출연금 및 전문인력육성 적립기금 목표액은?

☞ 답 변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각 직능별 위원회에서 적립기금목표를 설정 운영할 것임.

(질 의)

- 전문인력육성에 있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만 육성하고 농민후계자는 육성하지 않는 이유는?

☞ 답 변

- 농민후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정과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위 3개 단체는 정부의 지원없이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음.

(질 의)

- 기금의 구분관리의 적립에 있어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은 위험성이 있어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답 변

- 안전성이 있는 정기예금이 좋을 것 같음.

(질 의)

- 현재 4-H 후원회 회원수는?

☞ 답 변

- 현재 22명 있음.

■■■.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질 의}

- 협의회를 범시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2조(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답 변

- 구성관계는 중앙, 도의 지침등에 의한 것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수정이 가하다고 생각됨.

5. 수정안 요지

■ 조례명 :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안 제6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수정안 대비표>

기 정 안	수 정 안
제1조~제3조(생략)	제1조~제3조(원안과 같음)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생략)	제5조(원안과 같음)
제6조(회의) ①~②(생략) ③위원회에 상정할 실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제6조(회의) ①~②(원안과 같음) ③----- ----- -----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부 칙(생략)	부 칙(원안과 같음)

■ 조례명 :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를 삭제한다.

안 제2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리자는 교육, 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1조~제21조(생략)	제1조~제21조(원안과 같음)
제22조(관리비의체납징수)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수 있다.	<삭제>
제23조~제24조(생략)	제23조~제24조(원안과 같음)
제25조(교육및지도감독) ①(생략) ②교육·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및지도감독) ①(원안과 같음) ②관리자는 교육·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제29조(생략)	제26조~제29조(원안과 같음)
부칙(생략)	부칙(원안과 같음)

■ 조례명 :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제1항중 '심의하여'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중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안 제10조 제2항중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를 '예치하여'로 한다.

안 제12조 제7호중 '인정하는사업'을 '인정하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제5조 (생략)</p> <p>제6조 (위원회의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u>심의하여</u>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p>	<p>제1조~제5조 (원안과같음)</p> <p>제6조 (위원회의기능) ①- - - - - - - - - - - - - - - 심의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 중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 - -</p>
<p>제10조 (기금의구분관리) ①생략 ②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u>예치하거나</u>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제10조 (기금의구분관리) ①(원안과같음) ②- - - - - - - - - - 예치하여 - - - - - - - - - - - .</p>
<p>제11조 (생략)</p> <p>제12조 (운용기금의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p> <p>1. ~6. (생략)</p> <p>7.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u> 사업</p>	<p>제11조 (원안과같음)</p> <p>제12조 (운용기금의사용) - - - - - - - - - - 1. ~6. (원안과같음) 7. - - - - - 인정하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p>

■ 조례명 :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중 '보건소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안 제3조중 '협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전개'를 '전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중 '심의'를 '사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구성) ①(생략) <u>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u> <u>③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신설)</u>	제2조(구성) ①(원안과 같음) <u>②- - - - - 위원회에서 선임한다.</u> <u>③- - - - -</u> <u>- - - - -</u> <u>- - - - -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으로 한다.</u>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 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전개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	제3조(기능) - - - - - <u>- - 심의 의결 - -</u> 1. - - - - - <u>전개에 관한 사항</u> 2. - - - - - <u>- - - - -</u> <u>- - - - - 사항</u>

6. 심사결과

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나.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라.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수정가결

7. 봉 입

가.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나.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증 개정조례안

다.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라.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마.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농어촌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객업소"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설치제한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안에서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홍주점을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 여관, 여인숙을 말한다.
5. "학교"이라 함은 교육법제82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다만 공사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6. "취락"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치제한지역안에서의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제한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함에 있어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경계에서 200미터이내의 지역을 그 제한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객업의 설치제한지역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정시에는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의 계획적 개발에 지장이 있는 지역
3. 취락지, 학교등 교육시설 주변지역으로서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4. 명승지, 사적지 인근지역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6.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제한지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상지역별로 제한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인 발전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제한지역의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제한지역을 추가지정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제한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한의 목적
2. 설치제한지역의 범위
3. 설치제한시설의 종류
4. 설치제한지역의 적용에 관한 기준
5. 기타 접객업소의 설치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제한의 특례) 시장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허용하는 사항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른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1조중 '충주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충주시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5인이내의 공무원과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제2호중 '개별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조례 호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상수도의 위생 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
-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 ④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 및 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 실시 등 급수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 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충주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 제12조(계량기설치)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회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위원은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협의회의 업무) ①협의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원 선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2. 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3.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 개·보수 및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협의회 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①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1인을 둔다.
②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감사는 연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시설책임자임명) ①협의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시설책임자'라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시설책임자는 협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19조(시설책임자임무) ①시설책임자는 시설물의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전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시설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분기별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20조(관리비의징수) ①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리비는 협의회의 의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리비의운영규정) ①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는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시설물의보수주체) 시설물의 보수는 관리자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보수비의부담) ①시설물의 보수의 원칙은 관리자의 주관으로 하되 협의회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사용자와 협의에 의한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5조(교육및지도감독) ①관리자는 연1회이상 협의회의 의장과 시설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한다.
②관리자는 교육·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서 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필요할 경우 읍·면·동장 또는 협의회로 부터 보고서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서류비치및보존기간) ①협의회는 협의회 운영과 관리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1.현금출납부 (별지 제4호 서식)
- 2.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 3.시설물 관리카드 (별지 제1호 서식)
- 4.비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 5.시설물 유지관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중 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보존기간은 최초 작성일로 부터 2년, 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대한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28조(권한의위임) 관리자는 다음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 1.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록,보존
- 3.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 4.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위탁
- 5.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치
- 6.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조치
- 7.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

8.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
9.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 설치
10. 제13조의 규정에 협의회 설치
1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보수주체
1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 지도감독 및 위생환경조사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충주시조례 제208호)는 이를 폐지한다.

충주시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ff후원회의 기금 조성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라 함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동조 제3항 제3호,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농촌지도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ff회원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충주시의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4-ff후원회의 회비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2. 기타 지원금

제5조(위원회구성) ①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ff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3인 및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인력육성계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계장, 생활개선회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4-ff후원회는 인력육성계장, 4-ff후원회장과 4-ff후원회 임원 3인 및 각 분야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조직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심의내용 중 자치단체의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건의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구분관리) ① 적립기금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후원회에 각각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용기금은 당해년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의 10페센트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관리계획) ① 기금관리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2.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3.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4. 농촌생활환경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5.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6.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
7. 기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력육성에 관한 사업

제13조 (회계관리) ① 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② 기금운용관은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무과 담당업무제장으로 한다.
③ 단체별 운용기금관리는 각단체별 회장책임하에 자체 기금관리규정을 제정관리한다.
④ 단체별 회장은 운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및예산결산) ① 기금운용관리는 매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충주시농촌지도자회장, 충주시생활개선회장, 충주시4-8후원회장은 운용기금에 대
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육성기금운용결산보고서와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기금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여는 충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아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공무원이 위원인자는 그 재직기간동안으로 한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보고) ①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주관부서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11조 (실비보상)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